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,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사람이 임신·출산 또는 군 복무 등으로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교육을 연기 또는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광산안전법 시행규칙」 등 14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1) 법령별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·부령안

제1조(「광산안전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전단 중 “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”를 “국외체류”로, “입원해 있는”을 “인한 입원, 임신·출산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4항제2호 중 “질병”을 “질병, 임신·출산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제3항제1호 중 “질병”을 “질병, 임신·출산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입원해 있는”을 “인한 입원, 임신·출산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질병”을 각각 “질병, 임신·출산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임신·출산한 경우

제7조(「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 전단 중 “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”를 “국외체류”로, “입원해 있는”을 “인한 입원, 임신·출산”으로 한다.

제8조(「약사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1항제7호 중 “질병이나”를 “질병이나 임신·출산 또는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의3서식 신청사유란 중 “질병이나”를 “질병이나 임신·출산 또는”으로 한다.

제9조(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3항 중 “과건근무”를 “과건근무, 군 복무, 임신·출산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3항 중 “과건근무”를 “과건근무, 군 복무, 임신·출산”으로 한다.

제10조(「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1조제5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군 복무 중이거나 임신·출산한 경우

제11조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5제2항제2호 중 “질병이나”를 “질병이나 임신·출산 또는”으로 한다.

제12조(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보수교육 유예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본인의 질병, 군 복무, 임신·출산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

나.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제13조(「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2항제1호 중 “질병”을 “질병, 임신·출산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3제2항제1호 중 “질병”을 “질병, 임신·출산”으로 한다.

제14조(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, 질병·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”을 “국외체류, 질병·부상 등으로 인한 입원, 임신·출산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안전교육) ① (생략)	제10조(안전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<u>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</u> , 질병·부상 등으로 <u>입원해 있는 등</u> 정해진 기간 안에 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안전교육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관할 사무소장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	② ----- ----- <u>국외체류</u> ----- ----- <u>인한 입원, 임신·출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8조(보수교육의 시기·대상·비용·방법 등) ① ~ ③ (생략)	제18조(보수교육의 시기·대상·비용·방법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. 이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본인의 <u>질병</u>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	2. ---- <u>질병, 임신·출산</u> ---- ----- ----- -----
⑤·⑥ (생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

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2조의2(체육지도자의 재교육) ①·②(생략)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. 1.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무수행, <u>질병</u> ,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2. (생략) ④ ~ ⑨(생략)	제22조의2(체육지도자의 재교육) ①·②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<u>질병, 임신·출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④ ~ ⑨(현행과 같음)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) ① · ② (생략) ③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교육대상자가 <u>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</u> , 질병 · 부상 등으로 <u>입원해 있는</u>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④ ~ ⑩ (생략)	제5조(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 <u>국외체류</u> ----- ----- <u>인한 입원</u> , <u>임신 · 출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④ ~ ⑩ (현행과 같음)
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) ① (생략)	제5조(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군복무, <u>질병</u> , 해외체류,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	1. ----- <u>질병, 임신·출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
2.·3. (생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	③ ----- ----- ----- -----

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. 1. 군복무, <u>질병</u>, 해외체류,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2. ~ 3. (생략) ④ ~ ⑧ (생략)	-----. -----. 1. ----- <u>질병, 임신·출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2. ~ 3. (현행과 같음) ④ ~ ⑧ (현행과 같음)
--	--

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4조(환경기술인의 교육) ①· ② (생 략)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교육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. 1.·2. (생 략) <u><신 설></u> 3. (생 략)	제64조(환경기술인의 교육) ①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<u>2의2. 임신·출산한 경우</u> 3. (현행과 같음)
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조(교육 등) ①·② (생략)	제13조(교육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<u>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</u> , 질병·부상 등으로 <u>입원해 있는 등</u> 제1항에 따른 교육시기에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을 연기하려는 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	③ ----- ----- <u>국외체류</u> ----- ----- <u>인한 입원, 임신·출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
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2(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면제) ①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.	제5조의2(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면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본인의 <u>질병이나</u>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	7. ----- <u>질병이나 임신·출산 또는</u> ----- ----- -----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의2(물리적방호 교육의 이수 시간 등) ①·② (생략)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국내외 <u>과전근무</u> 등 물리적방호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대상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물리적방호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. ④·⑤ (생략)	제5조의2(물리적방호 교육의 이수 시간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 <u>과전근무, 군 복무, 임신·출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9조(방사능방재 교육시간 및 내용) ①·② (생략) ③ 방사능방재교육 대상자가 국내외 <u>과전근무</u> 등 방사능방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방사능방재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. ④ (생략)	제19조(방사능방재 교육시간 및 내용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 <u>과전근무, 군 복무, 임신·출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	④ (현행과 같음)

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1조(원자력통제교육) ① ~ ④ (생략) ⑤ 영 제1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까지 원자력통제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. 1. 2. (생략) <u><신설></u> 3. (생략) ⑥ · ⑦ (생략)	제141조(원자력통제교육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<u>2의2. 군 복무 중이거나 임신 · 출산한 경우</u> 3. (현행과 같음) ⑥ · ⑦ (현행과 같음)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의5(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) ① (생 략)	제20조의5(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교 육을 면제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본인의 <u>질병이나</u> 그 밖의 사 유로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	2. ----- <u>질병이나 임신·출 산 또는</u> ----- ----- 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보수교육) ① (생략)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. 1. (생략) 2. <u>보수교육 유예: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</u>	제9조(보수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<u>보수교육 유예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u> <u>가. 본인의 질병, 군 복무, 임신·출산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</u> <u>나.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</u>
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---------	------------

제10조의3(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, <u>질병</u>,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2. (생략) ③ ~ ⑤ (생략)	제10조의3(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<u>질병, 임신·출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--	---